## ■ 「현금 IC 카드 이용약관」 개정대비표

1. 개정내용

1. 개정내용 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 1 조 (목적)~제 11 조(수수료) (생략)	제 1 조 (목적)~제 11 조(수수료) (좌동)	
		전자금융거
<u>제 12 조(손해배상 및 면책)</u>	제 12 조(손해배상 및 면책)	래 약관으로
① 은행은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	① 은행은 카드의 위·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	써"「전금법」
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<u>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</u>	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<u>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'정보통신망</u>	제9조에
금액과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	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	따른 3종의
	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	전자금융거
	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	래사고 유형
	1 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. 다만, 부정이체	중 일부를
	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	누락한 조
	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.	항"에 해당
		하므로, 누락
		된 전자금융
		거래사고 유
		형을 추가하
		여 개정함
		초과손실액
②~④ (생략)	②~④ (좌동)	발생시 보상
		부분 추가함
제 13 조 (카드의 반납)~제 17 조(관할법원) (생략)	제 13 조 (카드의 반납)~제 17 조(관할법원) (좌동)	
- 부칙 -	- 부칙 -	
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	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	

<sup>2.</sup>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